

# 정 관

2017年 06月 01日 최초 制定

2019年 03月 28日 1차 改定

2023年 03月 29日 2차 改定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

#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

정 관

## 제 1 장 총 칙

###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 이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INNOX Advanced Materials Co., Ltd.)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반도체 패키징용 재료 제조 판매업
2. 테이프 제조 판매업
3. 회로기판 재료 제조 판매업
4. 전자정보재료 제조 판매업
5. 고분자재료 제조 판매업
6. 무역업
7. 컨설팅, 마케팅 및 지원사업
8.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재 제조 판매업
9. 정밀화학소재 제조 및 판매업
10. 디스플레이 재료 제조 판매업
11. 임가공, 위탁생산업
12. 부동산 매매, 임대, 관리업
13. 유기이엘(OLED) 소재 제조 및 판매업
14. 이차전지 소재 제조 및 판매
15. 전기, 전자용 유기·무기 재료의 제조 및 판매
16. 폐전지 재활용
17.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18.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19. 광물자원개발 및 판매업
20. 친환경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21. 전 각호에 관련된 연구용역 사업
22.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① 회사의 본점을 충청남도 아산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www.innoxamc.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머니투데이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 제6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 제7조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611,899주로 한다.

#### 제8조 <삭제>

#### 제8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으로 한다.

#### 제9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전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주 발행 시 이사회 결정으로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예정 주식총수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보통주식의 4분의 1 이내로 하되,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은 우선주식의 발행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 10%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율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결의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으로 발행될 수 있다.

1.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우선주주의 상환청구권 또는 회사의 상환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 1개월 전까지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한 청구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하고, 주주로부터의 상환 청구 없이 회사가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 전에 우선주주에게 서면으로 소각의 의사를 통지하고 상환 일에 상환 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3)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와 발행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연1% 이상 12%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원으로 한다. 단, 상환시 상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한다.

(4)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되,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기로 한다

(2) 전환청구기간은 당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 가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회사는 위 1호 및 2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제10조 (신주인수권)

-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주권을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상법 제 542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이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업확대, 연구개발, 기술도입,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경영상의 필요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9) 근로복지기본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제11조 (일반 공모 증자 등)

(없음)

####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조의 3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 감사 또는 피용자및 상법시행령 제 30조 제 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제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 542조의 8 제 2항 제 5호의 최대주주, 주요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 또는 제 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액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행사 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의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삭 제>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 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 가격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 또는 인수,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신주를 발행 또는 인수, 납입된 것으로 본다.

####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15조 <삭제>

#### 제15조의 2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 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제18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

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 제19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회사가 영업확대, 연구개발, 기술도입,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경영상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 법인, 기관투자자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단,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9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단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

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의2 (교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제21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 4 장 주 주 총 회

#### 제22조 (소집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눈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 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23조 (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7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 후보자 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 1항과 제 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조의 4 제 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5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6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7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29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자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30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개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1조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 (결의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을 위한 정관변경, 이사회교체, 감사해임을 안건으로 결의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70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직이사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 2항과 같은 결의방법을 적용할 안건은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적시하여야 한다.

### 제33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 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 제 1 절 이 사

제34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 제35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다수로 선임한다.
-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조의 2 (이사의 해임)

- ① 주주총회에서 동시에 2인 이상의 이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70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의 찬성으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해임에 관한 제1항 기재 요건을 개정,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의결요건에 의하여 그 개정, 변경을 가결할 수 있다.

### 제36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그 만료될 경우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②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정관 제34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7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8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이용 및 누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 및 누설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2 절 이 사 회

#### 제40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1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2조 (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3조 (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ESG위원회
  - 2) 감사위원회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 절 대 표 이 사

#### 제44조 (회사대표의 선임)

대표이사(사장)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45조 (회사대표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제 6 장 감 사

#### 제4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6조의2 (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① 제46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제47조 (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48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49조 (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50조 <삭 제>

## 제 7 장 회 계

### 제51조 (사업연도)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2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4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 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배당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제54조의2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55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금전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④ 배당금의 지급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받은 후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5조의2 (분기배당)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5. 「상법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 제56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 제1조 (최초의 사업연도)

당 회사의 최초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조 (내부규정)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 제3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대한 특례)

본 정관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당 회사 설립 전 분할 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 제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사에 관한 법규 및 기타 법령에 의거한다.

#### 제5조 (시행일)

- ① 이 정관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정관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③ 이 정관은 2023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3항·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위원부터 적용하며, 제46조제4항·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